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기간전력망법 제정에 따른 신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해상풍력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영산강수질측정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응축성 미세먼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검역시행장 관리·운영 및 정밀검역 수행을 위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강우레이더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기상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정원 18명(6급 5명, 7급 7명, 8급 3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을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6.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전력산업정책관 등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연장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항공기 조류 충돌 예방 대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 24시간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전문경력관 나군 4명)을 증원하고, 하부조

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예산처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2) 입법예고(2026. 2. 0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제5조제5항제5호 중 “예산 편성”을 “세입·세출 예산 편성”으로 한다.

제5조제6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부 소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지속가능발전 중앙추진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2의2.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및 운영 총괄

제5조제6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제5조제6항제18호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8호 및 제30호를 각각 삭제

하고, 같은 항에 제31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한국환경보전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2. 혁신제품 지정·관리 업무
33. 환경백서 발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4.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및 운영기술 지원
35. 환경분야 조세 대응 총괄(세제개편 제외)

제5조제1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대테러 대책의 수립·실시

제7조제10항제7호 중 “강우레이더 구축 등 홍수예보시설”을 “홍수예보시설”로 한다.

제7조제14항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5항제4호, 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상수도 관련 기자재의 품질기준”을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 및 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뭄 예·경보, 기초조사 등 가뭄정책 및 제도개선 총괄
12. 가뭄 시 식수 공급 등 대응 총괄
13. 수열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조제16항제4호 중 “가뭄 등 비상시 상수도의”를 “수도사고 등 비상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7호까

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에 관한 사항

제7조제17항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8항에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먹는물 관련 기기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5. 먹는샘물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운영

16. 샘물 등 개발 허가에 관한 사항

17.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8.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 등)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4. 야생동물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제5호를 삭제한다.

11.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냉매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제5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6항에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환경전문심사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제도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12. 허가배출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13.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0조제3항제3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순환경제통계 관련 제도 개선 및 순환경제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제10조제5항에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 전처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설정·관리 및 생산시설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3.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6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재활용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재생원료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등 제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설계·표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7항제3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사항

제11조제6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재난에 관한 사항

제11조제7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화학사고 예방·대응대책 수립·시행 및 화학테러 예방 등에 관한 사항

25.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6.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기자동차 충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

제12조제19항제1호 중 “분야”를 “분야 기후테크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분야”를 “분야 기후테크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인공지능”을 각각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인공지능·에너지”를 각각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인공지능·에너지데이터”를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에너지데이터”로

한다.

제12조제14항제5호 중 “기후테크(Tech) 등 신기술 기반 신산업”을 “기술 기반 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환경”을 “환경전문공사업, 환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령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환경산업체 실적관리 및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

15. 한국환경산업협회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5항제26호 중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를 “기후변화”로 한다.

제12조제2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제12조제2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개발·보급”을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7.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전·등록·처분 등에 관한 사항

제42조제3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3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 중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 제44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5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부칙 제3조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을 삭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부칙 제5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중 “2026년 4월 30일”을 “2028년 4월 30일”로, “2026년 5월 1일”을 “2028년 5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26년 6월 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2026년 7월 1일”을 “2028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839”를 “841”로, 일반직계 “831”을 “833”으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09”를 “111”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839”를 “841”로, 일반직계 “831”을 “833”으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24”를 “126”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계 “358”을 각각 “360”으로,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37”을 “38”로,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47”을

“48”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58”을 각각 “360”으로,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37”을 “38”로,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45”를 “46”으로 한다.

별표 13 중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를 “1”로 하고,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 다음에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를 신설한다.

별표 1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0”을 각각 “52”로, 수의주사 “9”를 “11”로 한다.

별표 2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77”을 각각 “159”로, 방송통신주사 “12”를 “9”로, 기상주사 “2”를 “0”으로, 방송통신주사보 “19”를 “16”으로, 기상주사보 “4”를 “0”으로, 공업서기 “3”을 “2”로, 시설서기 “4”를 “3”으로, 방송통신서기 “5”를 “4”로, 방송통신서기보 “3”을 “1”로, 기상연구사 “4”를 “3”으로 한다.

별표 2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77”을 각각 “159”로, 방송통신주사 “12”를 “9”로, 기상주사 “2”를 “0”으로, 방송통신주사보 “19”를 “16”으로, 기상주사보 “4”를 “0”으로, 공업서기 “3”을 “2”로, 시설서기 “4”를 “3”으로,

방송통신서기 “5”를 “4”로, 방송통신서기보 “3”을 “1”로, 기상연구사 “4”를 “3”으로 한다.

별표 2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19”를 각각 “120”으로, 4급 이하 “116”을 “117”로 한다.

별표 2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2”를 각각 “146”으로, 전문경력관 “45”를 “49”로 한다.

별표 27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며, 별표26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7]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57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물재해대응과	4명 (5급 2명, 6급 2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2.기후에너지정책실 수소열산업 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7년 3월 31일까지
3.기후에너지정책실 국제협력관	0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4.기후에너지정책실 수소열산업 정책관 열산업혁신과	4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5.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산업정 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7년 3월 31일까지
6.에너지전환정책실 재생에너지 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7년 3월 31일까지
7.에너지전환정책실 재생에너지 정책관 풍력산업과	2명 (4급 1명, 5급 1명)	2027년 3월 31일까지
8.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망정책 관 계통운영혁신과	3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7년 3월 31일까지
9.에너지전환정책실 원전산업정 책관 원전지역협력과	0명	2027년 3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감사관) ① · ② (생 략)	제3조(감사관)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③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u>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 동감사</u>	<u><삭 제></u>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④ 환경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④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u>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 동감사</u>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 ④ (생 략)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 ④ (현 행과 같음)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 한다.	⑤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부 내 <u>예산 편성</u> 및 집행 관 리 총괄	5. -- - <u>세입 · 세출 예산 편성</u> - -----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⑥ 환경정책기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⑥ ----- -----

보좌한다.

1. · 2. (생략)

<신설>

3.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보급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식·정
보수집,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
원

6. ~ 10. (생략)

<신설>

11. ~ 17. (생략)

18. 환경 분야의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

19. ~ 27. (생략)

28. 환경 분야 정책통계기반 평
가에 관한 사항

29. (생략)

30. 국제기구 통계협력 및 요구
통계 제공에 관한 사항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환경정책기본법」의 개
정 및 운영 총괄

3. 부 소관 지속가능발전 정책
의 개발 및 종합·조정에 관
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 중앙추진계획
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삭제>

6.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
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1. ~ 17. (현행과 같음)

1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
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
영에 관한 사항

19. ~ 27. (현행과 같음)

<삭제>

29. (현행과 같음)

<삭제>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31. 한국환경보전원에 대한 관 리·감독에 관한 사항</u> <u>32. 혁신제품 지정·관리 업무</u> <u>33. 환경백서 발간 및 보급에 관 한 사항</u> <u>34.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 및 운영기술 지원</u> <u>35. 환경분야 조세 대응 총괄(세 제개편 제외)</u>
⑦ ~ ⑩ (생 략) ⑪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 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 ----- ---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대테러 대책의 수립·실시</u>
7. (생 략) 제7조(물관리정책실) ① ~ ⑨ (생 략) ⑩ 물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7. <u>강우레이더 구축 등 홍수에 보시설의 설치 추진</u> 8. ~ 15.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7조(물관리정책실) ① ~ ⑨ (현 행과 같음) ⑩ ----- -----. 1. ~ 6. (현행과 같음) 7. <u>홍수예보시설</u>----- ----- 8. ~ 15. (현행과 같음)

⑪ ~ ⑬ (생략)	⑪ ~ ⑬ (현행과 같음)
⑭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u>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u>	<u><삭제></u>
18. <u>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설정·관리 및 생산시설 평가 등에 관한 사항</u>	<u><삭제></u>
19. <u>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u>	<u><삭제></u>
⑮ 물이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u>	<u><삭제></u>
5. <u>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 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에 관한 사항</u>	<u><삭제></u>
6. ~ 8의2. (생략)	6. ~ 8의2. (현행과 같음)
9. <u>먹는물 관련 기기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u>	<u><삭제></u>
10. <u>상수도 관련 기자재의 품질 기준 등에 관한 사항</u>	10. <u>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 및 인증</u> -----
<u><신설></u>	11. <u>가뭄 예·경보, 기초조사 등</u>

<신 설>

<신 설>

11. (생 략)

⑯ 수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가뭄 등 비상시 상수도의 방
재계획 총괄

<신 설>

<신 설>

5. ~ 15. (생 략)

⑰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 략)

16. 먹는샘물 등에 관한 정책 수
립 및 운영

17. 샘물 등 개발 허가에 관한
사항

18.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

가뭄정책 및 제도개선 총괄

12. 가뭄 시 식수 공급 등 대응
총괄

13. 수열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
에 관한 사항

14. (현행 제11호와 같음)

⑯ -----
-----.

1. ~ 3. (현행과 같음)

4. 수도사고 등 비상시 -----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
리에 관한 사항

6.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
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에 관한
사항

7. ~ 17. (현행 제5호부터 제15
호까지와 같음)

⑰ -----
-----.

1. ~ 15.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한 사항

19.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및 검
사에 관한 사항

⑮ 물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자연보전국) ① ~ ③ (생 략)

④ 생물다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 략)

<신 설>

<신 설>

<삭 제>

⑮ -----
-----.

1. ~ 13. (현행과 같음)

14. 먹는물 관련 기기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5. 먹는샘물 등에 관한 정책 수
립 및 운영

16. 샘물 등 개발 허가에 관한
사항

17.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
한 사항

18.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및 검
사에 관한 사항

제8조(자연보전국)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
-----.

1. ~ 12. (현행과 같음)

13.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
록 등)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4. 야생동물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

⑤ (생 략) ⑥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u><신 설></u> ⑦ 환경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5. <u>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u> 6. (생 략) 제9조(대기환경국) ①·② (생 략) ③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 략) <u><신 설></u> 15. ~ 27. (생 략) ④ (생 략) ⑤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6. (생 략) <u><신 설></u>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u> ⑦ ----- -----. 1. ~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6. (현행과 같음) 제9조(대기환경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4. (현행과 같음) 14의2. <u>냉매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u> 15. ~ 2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26. (현행과 같음) 27. <u>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u>
---	---

⑥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10조(자원순환국) ①·② (생략)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3. 자원순환통계 관련 제도 개선 및 자원순환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4. ~ 8. (생략)

9.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⑥ -----
-----.

1. ~ 8. (현행과 같음)

9. 환경전문심사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제도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12. 허가배출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13.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0조(자원순환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2. (현행과 같음)

<삭제>

4. ~ 8. (현행과 같음)

<삭제>

10. (생략)

④ 폐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신설>

⑤ 생활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⑥ 자원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리에 관

10. (현행과 같음)

④ -----
-----.

1. ~ 7. (현행과 같음)

8. 순환경제통계 관련 제도 개선 및 순환경제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⑤ -----
-----.

1. ~ 8. (현행과 같음)

9.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 전처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설정·관리 및 생산시설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3.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⑥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한 사항(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 한정
한다)

5. 재활용폐기물의 유통·교환
에 관한 사항

6. ~ 12. (생략)

<신설>

<신설>

⑦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3. 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 10. (생략)

11.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신설>

제11조(환경보건국) ① ~ ⑤ (생
략)

⑥ 화학제품관리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5. 재활용가능자원-----

6. ~ 12. (현행과 같음)

13. 재생원료 사용 및 관리에 관
한 사항

14.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 등 제품 지속가능성 제
고를 위한 설계·표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 -----
-----.

1.·2. (현행과 같음)

<삭제>

4. ~ 10. (현행과 같음)

<삭제>

12.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사항

제11조(환경보건국) ① ~ ⑤ (현
행과 같음)

⑥ -----
-----.

1. ~ 11. (생략) <u><신설></u> ⑦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략) <u>16. 화학물질사고·테러 예방·대응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17. ~ 24.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2조(기후에너지정책실) ① ~ ⑫ (생략) ⑬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 9. (생략) ⑭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현행과 같음) <u>1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재난에 관한 사항</u> ⑦ ----- -----. 1. ~ 15. (현행과 같음) <u>16. 화학사고 예방·대응대책 수립·시행 및 화학테러 예방 등에 관한 사항</u> 17. ~ 24. (현행과 같음) <u>25.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u> <u>26.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u> 제12조(기후에너지정책실)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 -----. 1. ~ 6. (현행과 같음) <u>7. 전기자동차 충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u> 8. ~ 10.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⑭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탈탄소 전환을 위한 에너지 · 환경 분야 <u>기후테크(Tech)</u> <u>등 신기술 기반 신산업</u> 육성 을 위한 창업, 사업화 지원 등 에 관한 사항	5. ----- ----- <u>기술 기반 산업</u> -----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u>환경 컨설팅 등 환경 서비스</u> 산업의 지원 및 육성	7. <u>환경전문공사업, 환경</u> ----- -----
8. <u>에너지·환경산업 분야의 정</u> <u>보망 구축, 해외 정보 네트워크</u> <u>크 운영 및 해외 마케팅 지원</u>	<삭제>
9. (생략)	9. (현행과 같음)
10. <u>기후·에너지·환경 분야</u> <u>국제 규범, 환경규제 분석</u>	<삭제>
11. (생략) <신설>	11. (현행과 같음)
<신설>	12. <u>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u> <u>에 관한 법령 개정 및 운영에</u> <u>관한 사항</u>
<신설>	13. <u>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u> <u>및 운영에 관한 법령 개정 및</u> <u>운영에 관한 사항</u>
<신설>	14. <u>환경산업체 실적관리 및 우</u> <u>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에</u> <u>관한 사항</u>
<신설>	15. <u>한국환경산업협회 관리·감</u>

⑮ 기후에너지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5. (생략)

26.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에너지 부문 전문인력 양성

⑯ ~ ⑰ (생략)

⑱ 열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폐열 활용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5. 히트펌프 등 열사용 기자재의 기술개발, 보급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히트펌프 기반 에너지자립설 구축사업 추진 총괄

7. ~ 12. (생략)

⑲ 기후에너지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에너지 분야 신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2. ~ 4. (생략)

독에 관한 사항

⑮ -----
-----.

1. ~ 25. (현행과 같음)

26. 기후변화 -----

⑯ ~ ⑰ (현행과 같음)

⑱ -----
-----.

1. ~ 3. (현행과 같음)

4. 미활용 열에너지 -----

--

5. 열사용 -----

<삭제>

7. ~ 12. (현행과 같음)

⑲ -----
-----.

1. ----- 분야 기후테크
등 -----

2. ~ 4. (현행과 같음)

5. <u>전기자동차 충전산업 활성화</u> <u>를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u>	<삭 제>
6. 기후·에너지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에 관 한 사항	6. ----- 분야 기후테크 등 -----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기후·에너지산업에 대한 인 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에 관 한 기술개발, 인력 육성 및 산 업기반 조성 사업 기획·추진	8. ----- 인 공지능, 디지털 기술 ----- ----- -----
9. 기후·에너지산업에 <u>인공지 능</u> 및 데이터 활용 등 신기술 을 적용한 제품·서비스 관련 시범사업의 기획·추진	9. ----- <u>인공지 능, 디지털 기술</u> ----- ----- -----
10. <u>인공지능·에너지</u> 데이터 관련 기술을 활용한 기후·에 너지산업의 수출 확대, 해외투 자 지원	10. <u>인공지능·디지털 기술·에 너지</u> ----- ----- -----
11. <u>인공지능·에너지</u> 데이터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기후· 에너지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 향 조사·분석	11. <u>인공지능·디지털 기술·에 너지</u> ----- ----- -----
12. <u>인공지능·에너지</u> 데이터 활용 기후·에너지산업에 관 한 유공자 포상제도의 수립· 운영	12. <u>인공지능·디지털 기술·에 너지</u> ----- ----- --

13. 기후·에너지산업에 대한
인공지능·에너지데이터 활용
관련 단체·협회의 육성 및
지원

⑳ (생략)

㉑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신설>

㉒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 6. (생략)

7. 에너지·환경 분야의 청정개
발체제(CDM: Clean Develop
ment Mechanism) 사업에 대
한 검토·심의 및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국제탄소시장
개발·협력·지원에 관한 사
항

8. 국제탄소시장에서 발급된 감
축실적 등록·이전 및 처분
등 국제감축실적 관리

13. -----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에너지
데이터 -----
--

㉒ (현행과 같음)

㉑ -----
-----.

1. ~ 9. (현행과 같음)

10.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㉒ -----
-----.

4. ~ 6. (현행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와 같음)

1. ~ 3. (현행 제4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

7.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전·
등록·처분 등에 관한 사항

<삭제>

9.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온
실가스 국제감축 관련 정책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10.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
응 지원을 위한 기후·에너지
·환경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

㉓ (생략)

제13조(에너지전환정책실) ① ~

⑥ (생략)

⑦ 에너지전환정책실에 전력산
업정책과·전력시장과·청정전
력전환과·전력망정책과·계통
운영혁신과·분산에너지과·재
생에너지정책과·태양광산업과
·풍력산업과·풍력보급팀·원
전산업정책과·원전환경과·원
전지역협력과를 두며, 전력산업
정책과장·전력시장과장·청정
전력전환과장·전력망정책과장
·계통운영혁신과장·분산에너
지과장·재생에너지정책과장·
태양광산업과장·풍력산업과장
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9. -----

----- 개발·보급
에 관한 사항

<삭 제>

㉓ (현행과 같음)

제13조(에너지전환정책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전력산
업정책과·전력시장과·청정전
력전환과·전력망정책과·계통
운영혁신과·분산에너지과·재
생에너지정책과·태양광산업과
·풍력산업과·원전산업정책과
·원전환경과·원전지역협력과

· 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원전산업정책과장 · 원전환경과
장 · 원전지역협력과장은 부이
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
관 · 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
관으로, 풍력보급팀장은 과학기
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
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행
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 ⑮ (생 략)

⑯ 풍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8.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수석전문
관-----

-----.

⑧ ~ ⑮ (현행과 같음)

⑯ -----
-----.

1. ~ 18. (현행과 같음)

19. 재생에너지(풍력) 이용 · 보
급 확산 정책의 수립 · 시행

20. 재생에너지(풍력) 업종 · 기
업 간 협력체제 구축 · 지원

21. 재생에너지(풍력) 기업에 대
한 투자 지원과 금융기관 업
무 협조에 관한 사항

22. 재생에너지(풍력) 집적화단
지 제도 및 민관협의회 운영
에 관한 사항

23. 재생에너지(풍력) 발전사업
의 주민 참여 및 수용성 확보

<신 설>

<신 설>

<신 설>

⑰ 풍력보급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생에너지(풍력) 이용·보급 확산 정책의 수립·시행

2. 재생에너지(풍력) 업종·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지원

3. 재생에너지(풍력)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과 금융기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재생에너지(풍력) 집적화단지 제도 및 민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재생에너지(풍력) 발전사업의 주민 참여 및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재생에너지(풍력) 발전사업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7. 재생에너지(풍력) 설비 안전

에 관한 사항

24. 재생에너지(풍력) 발전사업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5. 재생에너지(풍력) 설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6. 풍력 보급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⑰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관리 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
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풍력 보급 관련 애로사항 해
소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⑮ ~ ⑳ (생략)

제42조(수도권대기환경청) ①·②
(생략)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 16. (생략)

<신설>

④ ~ ⑥ (생략)

제44조(홍수통제소) ①·② (생
략)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홍수 및 갈수 예보 관련 교육
시설 운영·관리(한강홍수통
제소로 한정한다)

5. (생략)

④ 예보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삭제>

⑮ ~ ⑳ (현행과 같음)

제42조(수도권대기환경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6. (현행과 같음)

17. 제3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 중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홍수통제소)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5.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4. <u>강우레이더 관측소 설치(전기통신시설·설비는 제외한다)</u> 5. ~ 18. (생략) ⑤ 전기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u>강우레이더 관측소의 설치(전기통신시설·설비에 한정한다)·운영 및 관리</u> 5. ~ 8. (생략) 제45조(수자원정보센터) ① (생략) ② 수자원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u>강우레이더의 자료분석 및 정확도 개선</u> 9. ~ 21.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⑫ (생략) 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u><삭 제></u> 5. ~ 18. (현행과 같음) ⑤ ----- -----.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5. ~ 8. (현행과 같음) 제45조(수자원정보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u><삭 제></u> 9. ~ 21. (현행과 같음)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⑫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풍력보급팀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⑭ 제1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풍력보급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풍력보급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풍력산업과장이 분장한다.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환경부령 제91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102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환경부령 제10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8의 정원 17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9명,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

<삭 제>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

또는 방송통신주사 3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명)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 정원 17명(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및 사무운영서기보 4명)으로 본다.

② 환경부령 제91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10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20의 정원 2명(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 행정

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20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으로 본다.

③ (생략)

④ 환경부령 제104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8의 정원 14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6명,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일 이후

----- 2028년 4월 30일----- 2028년 5월 1일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2028년 6월 30일-----
----- 2028년 7월 1일 -----

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 정원 14명(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명,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⑤ 환경부령 제105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10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별표 16의 정원 6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4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illegible]

2026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6의 정원 6명(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명,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으로 본다.

- ⑥ 환경부령 제105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10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별표 18의 정원 9명(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4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명)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8의 정원 9명(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명, 행정서기·공업서기·

2028년 5월 1일 -----

⑥ -----

2028년 4월 30일 -----

2028년 5월 1일 -----

(7) -----

2028년 4월 30일

5월 1일

2028년

[illegible]

별표 18의 정원 5명(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 는 시설주사보 5명)은 <u>2026년 4</u> <u>월 30일까지</u> 존속하며, <u>2026년</u> <u>5월 1일</u>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 는 정원은 별표 18의 정원 5명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 기 또는 시설서기 5명)으로 분 다. ⑨ (생 략)	----- ----- -----<u>2028년 4</u> <u>월 30일</u>----- <u>2028년</u> <u>5월 1일</u>----- ----- ----- ----- -. ⑨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5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839</u>		<u>841</u>	+2	
	.		.		.		
	.		.		.		
일반직 계			<u>831</u>		<u>833</u>	+2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							
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			<u>109</u>		<u>111</u>	+2	
관 · 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		.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5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u>839</u>		<u>841</u>	+2	
일	반	직	•		•		
계			•		•		
			<u>831</u>		<u>833</u>	+2	
•			•		•		
•			•		•		
행	정	사					
사	무	관					
•							
공	업	사					
무	관						
•							
보	건						
사	무	관					
•							
전	산	사					
무	관						
•							
통	계	사					
무	관						
•							
사	서	사					
무	관	또					
는							
환	경	사					
무	관						
•							
•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58</u>	<u>360</u>	+2
일반직 계	<u>358</u>	<u>360</u>	+2
•	•	•	
•	•	•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보건 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u>37</u>	<u>38</u>	+1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기상 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u>47</u>	<u>48</u>	+1
•	•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58</u>	<u>360</u>	+2
일반직 계	<u>358</u>	<u>360</u>	+2
·	·	·	
·	·	·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보건 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u>37</u>	<u>38</u>	+1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기상 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u>45</u>	<u>46</u>	+1
·	·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3]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공업연구원 · 농업연구원 · 기상 연구원 · 보건연구원 또는 환경연구원	• • <u>2</u>	• • <u>1</u>	-1
<u>공업연구원 · 농업연구원 · 기상 연구원 · 보건연구원 · 환경연구 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 사무관 · 통계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u> • •	<신 설> • •	<u>1</u> • •	+1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4]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50</u>		<u>52</u>	+2	
일반직		계	<u>50</u>		<u>52</u>	+2	
	.		.		.		
	.		.		.		
수의주사			<u>9</u>		<u>11</u>	+2	
	.		.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1]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9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77	159	-18
일반직 계	177	159	-18
·	·	·	
·	·	·	
방송통신주사	12	9	-3
기상주사	2	0	-2
·	·	·	
·	·	·	
방송통신주사보	19	16	-3
기상주사보	4	0	-4
·	·	·	
공업서기	3	2	-1
·	·	·	
시설서기	4	3	-1
·	·	·	
방송통신서기	5	4	-1
·	·	·	
·	·	·	

방송통신서기보	<u>3</u>	<u>1</u>	-2
•	•	•	
•	•	•	
기상연구사	<u>4</u>	<u>3</u>	-1
•	•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2]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9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77	159	-18
일반직 계	177	159	-18
·	·	·	
·	·	·	
방송통신주사	12	9	-3
기상주사	2	0	-2
·	·	·	
·	·	·	
방송통신주사보	19	16	-3
기상주사보	4	0	-4
·	·	·	
공업서기	3	2	-1
·	·	·	
시설서기	4	3	-1
·	·	·	
방송통신서기	5	4	-1
·	·	·	
·	·	·	

방송통신서기보	<u>3</u>	<u>1</u>	-2
•	•	•	
•	•	•	
기상연구사	<u>4</u>	<u>3</u>	-1
•	•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5]

국립생물자원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119</u>		<u>120</u>	+1	
일반직		계	<u>119</u>		<u>120</u>	+1	
	.		.		.		
	.		.		.		
4급		이하	<u>116</u>		<u>117</u>	+1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6]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42</u>	• <u>146</u>	+4
일반직 계	<u>142</u>	<u>146</u>	+4
•	•	•	
•	•	•	
전문경력관	<u>45</u>	<u>49</u>	+4